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– 174호

#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교육훈련)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교육훈련)『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지원사업』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1일(수)
산업통상부장관

## 1 사업 개요

□ **사업 목적** : 첨단제조융합 분야 **박사후연구원(Post-doc) 대상 산학프로젝트 지원**을 통해 고급 인재 해외유출 방지 및 연구역량 강화

□ **지원 기간** : '26년 6월 ~ '31년 2월(최대 57개월, 3+2년)

□ **지원 분야** : **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등 총 8개 분야**

* ① 반도체, ② 디스플레이, ③ 배터리, ④ 바이오, ⑤ 로봇, ⑥ 방산, ⑦ 미래차, ⑧ 기타 주력산업

□ **지원 규모** : '26년 **총 112.5억원, 8개 분야별 각 1개 컨소시엄** 지원

○ 컨소시엄당 지원 : **1차년도 14억원, 2~5차년도 18.75억원 내외**

*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지급 시기 조정, 분할 지급 가능

□ **지원 조건** : 국비 100% 이하(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자율 매칭)

□ **지원 내용** : 인건비, 산학프로젝트 운영비, 기타 활동비 등

○ 박사후연구원의 독립·심화 연구지원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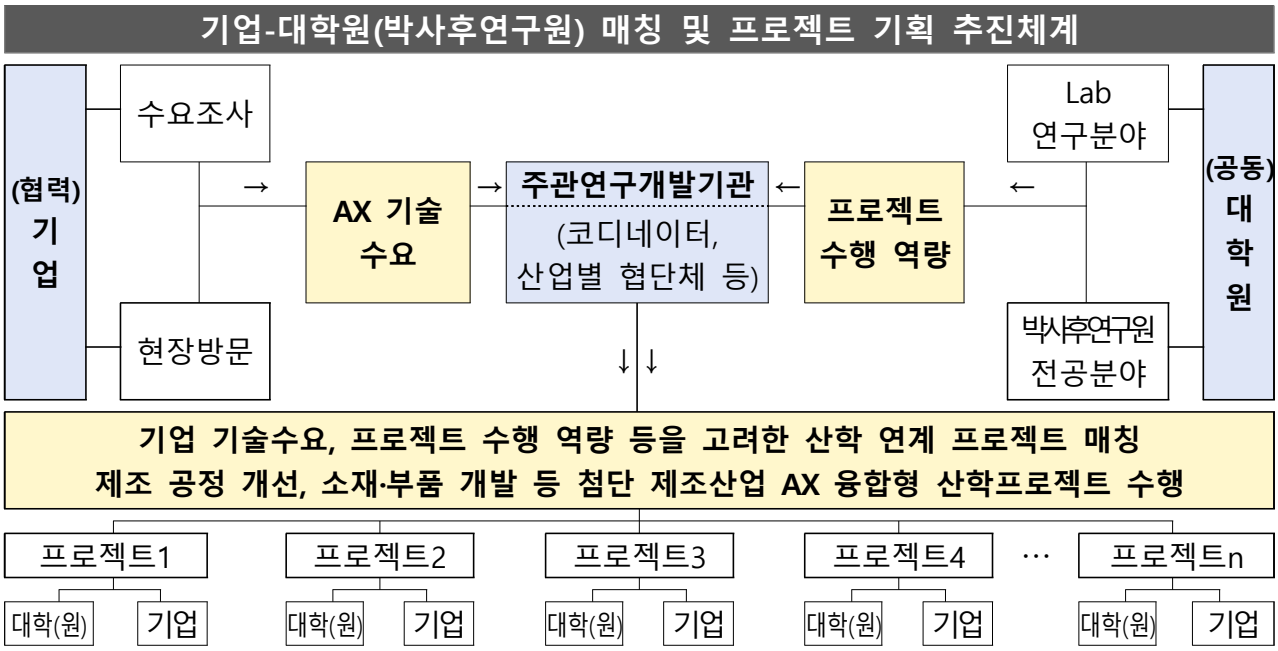
* 기업 수요-대학(원) 역량(박사후연구원 전공 등)을 고려한 프로젝트 발굴·매칭, 첨단제조(AX) 융합 및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

## 2 신청 자격 및 대상

□ 신청 자격 : 분야별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비영리기관(협·단체, 연구소, 대학 등) 컨소시엄

| 구분 | | 신청 대상 및 자격 |
|---|---|---|
| 분야별 컨소시엄 | 주관연구개발기관 | ㅇ 해당 분야별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-대학(원) 간의 산학프로젝트 매칭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국내 비영리기관<br>- 협회·단체, 연구소, 대학 등 |
| | 공동연구개발기관 | ㅇ 해당 분야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 중인 국내 대학(원)<br>- 4개 이상 대학(원) 참여 필수 |
| | 협력기업 | ㅇ 산업계 수요 발굴 및 산학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분야별 협력기업(참여 必)<br>- 대학별 비수도권 소재 기업 포함 필수(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(연구소 및 분원 등 포함) 소재지 기준)<br>-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(연구개발비 미지원), 참여 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|
| 참여연구원 | | < 수혜 대상 ><br>ㅇ 연구개발기관(**대학(원)) 소속 박사후연구원**으로 연구개시일 기준 **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자**(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필수, 전임교원 제외)<br>- 연구개시일은 산학프로젝트 시작일 기준이며, 산학프로젝트는 해당 단계 기간 내 종료 필수<br>- 산학프로젝트 기간 내 박사후연구원의 소속기관 재직 유지 의무화(예외사항 : 국내기업 취업)<br>< 멘토 ><br>ㅇ 박사후연구원 소속 대학(원) 전임교원<br>- 대학별 1인 이상 필수,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<br>< 그 외 ><br>ㅇ 대학별 연구근접지원인력(행정 인력)은 1명 내외로 참여 가능 |

**【 (참고) 산학프로젝트 추진체계 】**




* 프로젝트별 PL(Project Leader)은 대학별 박사후연구원(Post-doc)이 담당

* 프로젝트별 기간은 단계 내에서 연구 내용에 따라 결정

□ 지원 제외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기관 및 개인)는 신청 불가

*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(NTIS)의 사업과제-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

○ 연구개발기관, 연구(책임)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인 경우

○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

## 3 추진 절차 및 일정

| 추진절차 | 시행기관 | 일정(안) |
|---|---|---|
| 통합공고 | 산업통상부 / 한국산업기술진흥원 | '26.3.11. ~ 4.28. |
| ▼ | | |
| 연구개발계획서 접수<br>(전산접수) | 신청기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(IRIS) | ~4.28. |
| ▼ | | |
| 평가위원회 개최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연구개발과제평가단) | 5월~ |
| ▼ | | |
| 평가결과 확정 | 산업통상부 | 5월~ |
| ▼ | | |
|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 | 5월~ |
| ▼ | | |
|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| 산업통상부/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<br>신청기관 | 5월~ |
| ▼ | | |
| 협약체결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 | 6월~ |

## 4 평가방법 및 지표

□ **평가 방법** : 발표평가 실시

*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* 접수마감 후 1달 이내 발표평가 실시 예정이며, 필요시 비대면 평가 진행

□ 평가 기준(안)

| 평가항목 | 평가요소(내용) | 배점 |
|---|---|---|
|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| • 사업목표(최종, 당해)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<br>•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| 10 |
|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| •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, 협력기업, 수혜인원 역할 및 역량의 적절성<br>• 컨소시엄 내 협업 체계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<br>• 추진 주체의 역량 및 수행 의지의 적절성<br>• 지역 산업 생태계와 컨소시엄 역량 간 정합성 | 30 |
| 프로젝트 구성의 적절성 | • 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·수혜인원의 연구 역량 일치성<br>• 프로젝트의 기술적 시급성, AX 관련성 및 혁신성<br>• 국가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 기술·사업 등과의 연계성<br>• 구성된 프로젝트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| 30 |
| 성과 관리 및 사업비 활용 | • 고급인재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의 적절성<br>• 수혜인원의 산업계 진출 및 고용연계 적절성<br>•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<br>•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| 20 |
|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| • 국가 정책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<br>• 수혜인원의 심화 연구 및 실무 역량 강화에 대한 효과성<br>•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<br>• 기타 학술적·기술적·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 | 10 |
| **합 계** | | **100** |

□ **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** : 해당없음

##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

□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

## 6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 : ’26. 3. 11.(수) ~ ’26. 4. 28.(화) 17시까지

□ 신청 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<table>
<tr><td>접수방법</td><td>
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 및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<br>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</th><th>신청</th><th>확인</th><th></th></tr>
<tr><td>연구자는<br>NRI 가입,<br>연구자전환 동의<br>및 정보 등록·갱신<br>(학력, 경력 등)</td><td>IRIS 기관등록,<br>기관총괄담당자<br>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<br>기관대표자 등록 등</td><td>온라인 입력정보<br>작성 및<br>연구계획서 등<br>등록</td><td>주관연구개발<br>기관의<br>온라인 등록사항<br>확인・승인</td><td>연구과제<br>신청완료</td></tr>
<tr><td>1 연구자</td><td>2 주관연구개발기관</td><td>연구책임자</td><td>주관연구개발기관장</td><td></td></tr>
</table>
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<br>
1 (연구자)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<br>
① IRIS 회원가입<br>
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<br>
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<br>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<br>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<br>
※ ①,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③ : 연구책임자는 필수(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)<br><br>
2 (주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<br>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</td></tr>
<tr><td>유의사항</td><td>
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<br>
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<br>
③ 접수 마감일 17:00까지 ‘완료 및 제출’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(접수증 출력) 불가<br>
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<br>
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<br>
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<br>
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)<br>
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
■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iris.go.kr)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<br>
*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
</td></tr>
</table>

□ 문의처

○ 온라인 신청(IRIS) 관련 문의 : 1877-2041, 042-862-1500

○ 사업내용 관련 문의 : KIAT 산업인재전략실 02-6009-3270

○ 소관부처 :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-203-4223

## 7 기타 사항

□ 유의사항

○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%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,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(현물 제외)의 10% 이하로 계상해야 함.

○ 수혜 대상의 연구 역량 성장을 위해 무리한 양성 목표는 지양

○ 동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으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(3책 5공)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율은 적용

* 관련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

○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이 아닌 경우(협회·단체 또는 연구소 등),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 편성

* 단,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

○ 보안등급 분류 :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

○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

* NTIS(http://ntis.go.kr)의 "메뉴→사업과제→유사과제" 등을 활용, 중복성 검토

○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,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

○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## 8 근거 법령 및 규정

□ 관련 법(법령)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

□ 관련 규정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

붙임 1.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.

2.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. 끝.